

교원인사규정

| | |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제정 1986.12. 3 | 개정 1994. 5.24 | 개정 2008. 3. 1 | 개정 2014. 5. 1 | 개정 2017. 1.19 |
| 개정 1989. 7.24 | 개정 2000. 1.14 | 개정 2008.11. 1 | 개정 2014. 6. 9 | 개정 2018. 6.21 |
| 개정 1992. 2.24 | 개정 2001. 6. 1 | 개정 2009. 7. 1 | 개정 2014.10.16 | 개정 2019. 1. 1 |
| 개정 1993. 2.25 | 개정 2002.10. 8 | 개정 2010. 3. 1 | 개정 2015. 9. 1 | 개정 2019. 8. 1 |
| 개정 1993. 3. 1 | 개정 2005. 1. 1 | 개정 2013. 3. 1 | 개정 2016. 4.21 | 개정 2020. 2.21 |
| 개정 1994. 3. 1 | 개정 2006.11.16 | 개정 2013. 3.26 | 개정 2016. 9. 7 | |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 이라 한다) 교원의 인사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 이 규정은 본 대학 각 직위의 전임교원에게 적용하고, 비전임교원에게는 이를 준용한다.

② 방문교수, 대우교수, 연구교수, 기금교수, 겸직교수, 등 비전임교원의 임용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비전임교원 인사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한다.

(개정: 2019.1.1)

③ 조교에 관한 사항은 조교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한다.

④ 강사의 임용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강사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전임교원” 이라 함은 본 대학 각 학과(이하 각 학부와 대학원 등을 포함)에 소속하여 정규의 교육, 연구, 학생지도 및 보직업무 등을 담당하며, 재임용 및 정년보장심사 등을 통하여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각 직위의 교원을 말한다.
2. “비전임교원” 이라 함은 본 대학에 교육 및 연구를 위하여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임용한 교원을 말한다.
3. “강사” 라 함은 교과목의 강의를 위하여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임용하는 교원을 말한다.
4. “임용” 이라 함은 신규채용, 승진, 재임용, 전보, 겸임, 파견, 보직임면, 휴직, 직위해제, 정직, 복직,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.
5. “승진” 이라 함은 하위직위에서 상위직위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의2(교원의 직위) 교원의 직위는 교수, 부교수, 조교수로 한다. (개정: 2013.3.1)

제4조(겸직금지) ① 교원은 보수를 수반하는 다른 기관의 전임직을 겸할 수 없다.

② 교원이 다른 학교에 출강 하고자 할 때 또는 다른 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하고 그 기관의 직을 위촉받고자 할 때에는 교육·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속부서장의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다. (개정: 2019.1.1)

③ 총장은 제2항에 따른 겸직 승인 시, 겸직의 필요성, 기간의 적절성, 대상 기관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. (신설: 2019.1.1)

④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원은 그 해에 해당 업체로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받은 보수 일체를 다음해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지급 내역이 포함된 서류를 해당 업체로부터 발급받아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 (신설:2019.1.1)

1. 해당 연도 보수 일체의 월별 지급 내역

2. 교통비 및 회의수당 등 항목별 지급 내역

⑤ 교원이 창업으로 인하여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창업 관련업무에 대하여 1년간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. 또한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학과 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으로 연장할 수 있다.(개정: 2019.1.1)

제4조의2(겸임) ① 총장은 대학내의 학제간 교육 및 연구를 위하여 전임교원을 타 학과 또는 (특수)대학원 소속으로 겸임을 명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임명된 교원을 “겸임교수”라 한다.

② 겸임교수는 소속학과 주임교수의 동의와 겸임학과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겸임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. 임명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, 재임용할 수 있다.

③ 겸임교수가 겸임학과의 강의를 담당할 경우 소속학과 주임교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소속학과 및 겸임학과의 강의시간을 합하여 연간 책임시수를 충족하여야 한다.

④ 겸임교수는 겸임으로 인해 소속학과에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, 겸임학과의 주임교수는 학과업무에 대하여 학과소속 전임교원과 동등한 대우를 할 수 있다.

⑤ 겸임교수에게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. 다만, 특수대학원 겸임교수가 강의에 참여할 경우 소정의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,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강의 책임시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.

제4조의3(파견근무) 총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.

제5조(정년) ①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가 되는 학기의 말일로 한다. 1학기의 말일은 8월 31일, 2학기의 말일은 익년도 2월 말일로 한다. (개정: 2016.4.21)

② 연구업적이 뛰어나고 대학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만70세까지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6조(임용권자) 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②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.(개정: 2008.3.1)(개정: 2016.9.7.)

제7조(임용원칙) ① 교원의 신규채용은 정규채용과 특별채용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‘교원신규채용운영세칙’으로 따로 정한다.

② 교원의 임용사정은 그 자격, 업적, 근무성적 및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.

제8조(교원의 자격) 각 직위의 교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라야 한다. 다만, 뛰어난 업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1. 교수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교육 및 연구경력년수가 10년 이상인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을 가진 자
2. 부교수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교육 및 연구경력년수가 5년 이상인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을 가진 자
3. 조교수는 박사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을 가진 자 (개정: 2013.3.1)
4. (삭제: 2013.3.1)

제9조(임용기간 등 계약조건) ① 교원의 임용기간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.

1. 근무기간

가. 교 수 : 정년까지의 기간, 다만,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(부교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.

나. 부 교 수 :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. 다만, 타 대학 정년보장교원을 신규 임용할 경우에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. (개정: 2016.4.21)

(개정:2018.6.21)

다. 조 교 수 :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

라. (삭제: 2013.3.1)

2. 급여 : ‘교원연봉제운영규정’에 의한 보수

3. 근무조건 : 교수시간 및 소속 학과(학부) 등에 관한 사항

4. 업적 및 성과 : 교육·연구실적 및 봉사 등에 관한 사항

5. 재계약 조건 및 절차 : 근무기간 종료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

6. 그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임기의 기산은 당해 직위에 임용된 일로부터 한다. 다만, 임용기간이 학기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.

③ (삭제)

제9조의2(재임용) ① 각 직위별 교원의 재임용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수 재임용 : 교수승진 심사기준에 따른다.
2. 부교수 재임용 : 교수승진 심사기준에 따른다. (개정: 2016.4.21)
3. 조교수 재임용 : 학과별로 정한 재임용 기준에 따른다. (개정: 2016.4.21)
4. (삭제: 2013.3.1)
- ② 제9조 제1항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학과인사위원회 심의(주임교수 추천 포함)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그 임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다만 제21조에서 정한 직위별 최고근무연한을 초과하여 임용기간을 갱신할 수 없다. (개정: 2016.9.7.)
- ③ 제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기간이 정하여진 교원에 대하여는 그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. (개정: 2016.4.21)
- ④ 전항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교원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학과 주임교수를 통해 총장에게 재임용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: 2016.4.21)
- ⑤ 학과인사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 (개정: 2016.4.21)
- ⑥ 재임용 시기는 매년 3월 1일, 9월 1일자로 시행한다.

제9조의3(정년보장) 전임교원의 정년보장 임용은 교수승진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. (개정: 2016.4.21)

제10조(특별임용) ① 총장은 본 대학에서 정년퇴직한 교수로서 재직중 교육, 연구 및 봉사활동이 뛰어난 경우 명예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. (개정: 2006.11.16)

② 총장은 탁월한 교육 및 연구업적을 성취하였다고 인정되는 전임교원 또는 교외인사에 대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좌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. 또한 본 대학 정년보장교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POSTECH University Professor 또는 학과특임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. (개정: 2008.11.1.)(개정: 2014.5.1.)(개정:2017.1.19.)

③ 명예, 석좌교수, POSTECH University Professor, 학과특임교수 임용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 (개정: 2008.11.1.)(개정: 2014.5.1.)(개정:2017.1.19.)

제11조(연수계산) 교육 및 연구경력년수 계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은 통산할 수 있다.
2. 2개 이상의 기관에서 동시에 교육과 연구에 종사한 경우에는 1개 기관에서의 교육 또는 연구의 년수만 계산한다.
3.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가진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각각 5년 또는 2년간 연

구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한다.

4. 상기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이 별도 정할 수 있다.

제12조(삭제)

제13조(삭제)

제14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(개정: 2015.9.1)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(‘형법’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‘형법’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.)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7. 직무와 관련하여 ‘형법’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9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10. 미성년자에 대한 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’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·해임되거나,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11. 기타 품성이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자

제15조(구비서류) 교원으로 임용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자필이력서(소정양식) 2부
2. 최종학력증명서 1부
3. 경력증명서(재직증명서) 1부
4. 가족관계증명서 2부
5. 기본 증명서 1부
6.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2부
7. 주민등록등본 2부
8. 채용신체검사서 1부

- 9. 신원진술서 3부
- 10. 인사기록카드 2부
- 11. 서약서 1부
- 12.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1부
- 13. 교직원임용신고서 1부
- 14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제 3 장 승 진

제16조(승진최소근무년수) (삭제: 2016.4.21)

제16조의2(승진임용절차) 교원의 승진은 학과인사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시행한다. (개정: 2008.3.1)(개정: 2016.9.7.)

제17조(승진임용시기) 교원의 승진은 매년 3월 1일, 9월 1일자로 시행한다.

제18조(승진요건) ① 교원의 승진은 해당직위의 다음 각 호에 정한 최소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 다만, 학과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적용한다.

1. 교수 승진

가. 강의실적분야에서는 부교수 재임기간 중 3과목 이상의 강의 경험이 있어야 하고, 3과목 중 적어도 1개 과목은 대학원 과목이어야 하며, 강의에 대한 내용의 충실도 및 교육평가에서 만족할 만한 평가를 얻어야 한다.

나. 연구실적분야에서는 부교수 재임기간 중 박사를 배출한 실적이 있어야 하고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술지 또는 저서에 심사 게재된 논문(또는 특허)을 발표하였거나 혹은 이에 상응하는 국제수준의 연구(학술연구/산업연구) 실적을 이룩하여 해당 전문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우수 연구자로 인정되어야 한다. 그러나 대학내외의 특별한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현저한 공로가 인정될 경우에는 상기 조건을 신축성 있게 적용할 수 있다. (개정: 2016.4.21)

다. 봉사실적분야에서는 부교수 재임기간 중 대학의 발전을 위한 업무, 학회활동 혹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할 수 있다.

2. 부교수 승진

가. 강의실적 분야에서는 조교수 재임기간 중 2과목 이상의 강의경험이 있어야 하며 1개 과목은 대학원 과목이어야 하고 강의에 대한 내용의 충실도 및 교육평가에서 만족할 만한 평가를 얻어야 한다.

나. 연구실적분야에서는 조교수 재임기간 중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술지 또는 저서에 심사 게재된 논문(또는 특허)을 발표하였거나, 혹은 이에 상응하는 국제수준의 연구역량(학술연구/산업연구) 실적을 이룩하여 해당 전문분야에서 국내 우수 연구자로 인정되어야 한다. 그러나 대학내외의 특별한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참

여하여 현저한 공로가 인정될 경우에는 상기조건을 신축성 있게 적용할 수 있다. (개정: 2016.4.21)

다. 봉사실적분야에서는 조교수 재임기간 중 대학의 발전을 위한 업무, 학회활동 혹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할 수 있다.

3. (삭제: 2013.3.1)

② 교수 승진 심사 시에는 국내외 해당분야 외부전문가 5인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중 본인 추천이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 (개정: 2014.6.9)(개정: 2016.4.21)

제19조(삭제)

제20조(삭제)

제21조(근무연한) ① 정년보장을 받지 않은 전임교원이 동일직위에서 근무할 수 있는 최고 근무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수 : 제한 없음

2. 부교수 : 7년(개정: 2016.4.21)

3. 조교수 : 신규임용의 경우 4년, 재임용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(개정: 2016.4.21)

4. (삭제: 2013.3.1)

② 제1항의 제2호 및 제3호에 정한 연한 내에 승진하지 못한 부교수 및 조교수는 재임용하지 않는다. (개정: 2013.3.1)(개정: 2016.4.21)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연구 공백기간 발생 등 특별한 사유로 승진 또는 재임용 심사를 유보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3년 이내로 재임용할 수 있다. (신설: 2013.3.26.)(개정: 2016.4.21.)(개정: 2016.9.7.)

제22조(승진임용제한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 임용될 수 없다.

1. 징계의결요구, 징계처분, 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에 있는 자

2.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

- 정 직 : 18개월

- 감 봉 : 12개월

- 견 책 : 6개월

제23조(삭제)

제24조(삭제)

제25조(삭제)

제26조(삭제)

제27조(삭제)

제28조(삭제)

제29조(삭제)

제30조(삭제)

제31조(삭제)

제 4 장 인사위원회

제31조의2(교원인사위원회) 본 대학 교원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정관에 정한 바에 따르며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관 제58조에 정한 사항
2. 교원의 승진, 임용, 전보 등에 관한 사항
3. 교원 및 연구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(개정: 2008.3.1.)
4. 교원 정년 보장에 관한 사항
5. 교원의 연구년 승인에 관한 사항
6. 업적평가 및 연봉제도에 관한 사항 (개정: 2008.3.1.)
7. 교육 조교의 임용에 관한 사항
8. 교원 인사관련 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 (개정: 2008.3.1.)
9. 기타 교원 인사와 관련된 중요 사항

제31조의3(학과인사위원회) ① 각 학과에는 주임교수가 위원장이 되는 학과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속교원의 채용, 승진 등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.

③ 인사위원은 주임교수가 임명하며 교수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부교수로 임명할 수 있다. 단, 소속학과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의 수가 5명 미만인 경우, 해당학과 주임교수는 교무처장의 동의를 얻어 타 학과 교원을 인사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. (개정: 2014.10.16)

④ 인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 5 장 보 수

제32조(보수) 전임교원의 보수는 ‘교원연봉제운영규정’에 별도로 정한다.

제 6 장 신분보장

제33조(신분보장) 교원의 신분보장은 정관에 정한 바에 의한다.

제34조(당연면직)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면직된다.

1. 사망한 때

2. 정년에 달한 때
3. 제14조 각 호에 해당될 때
4. 휴직기간 만료후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하지 아니할 때
5.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되지 아니하였을 때 (2008.3.1일부 개정)

제35조(의원면직) 본인이 면직을 청원할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.

제35조의 2(의원면직 신청교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) ① 총장은 교원이 제35조의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과 검찰·경찰,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.(신설: 2017.1.19.)(개정:2020.2.21.)

1. 제3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
 2.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-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9조에 따른 파면·해임·강등·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(이하 “중징계“라 한다)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은 지체 없이 법인 정관 제65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총장은 법인 정관 제51조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.(신설: 2020.2.21.)
-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.(신설: 2020.2.21.)
- ④ 총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1호·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(신설: 2020.2.21.)
1.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
 2.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
 3. 감사원·검찰·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
 4.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

제36조(휴직) 교원의 휴직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한 바에 의한다.

제37조(직위해제 및 해임) 교원의 직위해제와 해임은 정관에 정한 바에 의한다.

제 7 장 상 별

제38조(포상)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1.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업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
 2.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다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될 때
- ② 포상은 표창 및 상장으로 구분하며 별도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39조(징계)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할 수 있다.

1. 교육관계법령, 정관 및 본 대학의 제규정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
2.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
3.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

제40조(징계의 종류 및 효력) ① 징계는 파면, 해임, 정직, 감봉, 견책으로 구분한다.

- ②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,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.(개정: 2020.2.21.)
- 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월봉액의 3분의 1을 감한다.
- ④ 견책은 과오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받고 훈계한다.

제41조(징계절차) 징계의 절차, 재심 등에 관하여는 정관에 정한 바에 의한다.

제42조(삭제)

제 8 장 보 칙

제43조(삭제)

제43조의2(이의신청 및 심사) ① 교원은 학과인사위원회의 임용, 승진, 정년보장 등 인사에 관한 사항과 학과(학부)의 장에 의한 연봉평가에 대하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원인사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 (개정: 2009.7.1)

②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교원인사위원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 하여야 한다. (개정: 2009.7.1)

③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교원인사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교원인사위원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 한다. (신설: 2009.7.1)

제44조(준용규정)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교원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 또는 기타의 예를 준용한다.

제45조(경과조치) (삭제: 2002.10.8)

부 칙

이 규정은 1992년 2월 24일 개정하여, 1991년 10월 17일부터 소급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3. 2.25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3. 3. 1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4. 3. 1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4. 5.24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.1.14부터 개정 시행하며,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시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.
2. (경과조치) ① 제9조 제1항 제 1호 다, 라 목의 임용기간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신임용 교원부터 적용하며, 그 이전부터 재직중인 조교수와 전임강사는 재임용시부터 적용한다.
② 1998학년도 제1학기 이후 부교수의 재임용시 2002년 8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재임용한 경우는 재임용일로부터 7년까지 재임용한 것으로 본다.
③ 부교수의 정년보장임용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10월 8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제9조의 2(재임용) 제3항은 2002년 9월 1일 이후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6년 11월 16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제4조 제3항은 2008년 2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11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①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신규임용되는 교원에게 적용한다. 다만 제17조(승진임용시기)는 모든 교원에게 적용한다.
② 인문사회학부 소속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3월 1일 이후 임용되는 교원에게도 개정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3월 26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6월 9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0월 16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4월 2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은 2016년 4월 21일부터 신규임용되는 교원에게 적용한다. 다만, 그 이전부터 재직 중인 조교수 및 부교수는 개정 전과 개정 후 규정 중에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7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2016년 4월 21일자 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2016년 4월 21일 이전부터 재

직 중인 조교수 및 부교수가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도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1월 19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6월 2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2월 2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